

(참 조)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-4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11.

제 출 자 : 달 서 구 청 장
(기획감사실)

1. 제안이유

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9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

3. 주요골자

-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→ “구공보 게재”로 개정(안 제7조)
- “지방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”로 개정(안 제3조·제5조·제6조제3항)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자치법규등”을 “조례·규칙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지방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

동조 제2항 및 제5조·제6조제3항중 “지방의회”를 “구의회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공포방법등)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구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

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

②고시 또는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·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·규칙 및 예산(이하 " <u>자치법규</u> 등"이라 한다)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조례·규칙등</u>
제3조(조례) ①조례의 전문에는 <u>지방의 회의</u> 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	제3조(조례) ①..... <u>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</u> (이하 " <u>구의회</u> "라 한다).....

현행	개정 (안)
<p>일자를 기입한다.</p> <p>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<u>지방의회</u>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</u>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<u>지방의회</u>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</p>	<p>②.....</p> <p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 <p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5조(예산등) ①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</u>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.</p>	<p>제5조(예산등)</p> <p>.....</p> <p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6조(번호) ①~②(생략)</p> <p>③<u>지방의회</u>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<u>지방의회</u>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번호) ①~②(형행과 같음)</p> <p>③<u>구의회</u>.....</p> <p>.....<u>구의회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7조(공포방법) 조례·규칙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관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공포방법등)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구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관의 게시로써 한다.</p> <p>②고시 또는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<p>제8조(공포일) ①조례·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나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관에 게시된 날로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8조(공포일)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·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관에 게시된 날로 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